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신규입사자 보수표)





1. 처우개선비 전산입력 기본 원칙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5. 기존종사자/신규입사자 입력내용 조회



1. 처우개선비 전산입력 기본 원칙

■ 제출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출 일자

- 기존 종사자 = 2015년 1월 말까지 제출(**제출기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
- 신규 입사자 =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급여제공 월 청구 전까지 **보수표만 입력**
예) 2015년 2월에 입사하고 서비스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3월 5일에 한다면 이 전까지 보수표를 입력 (**제출없음, 저장으로 완료**)

■ 제출 대상

- 2015년 1월 1일 이후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2014년에 보수(비교)표를 입력했을지라도 2015년 1월에 단 한 시간이라도 급여제공했을 경우 반드시 다시 입력(**입력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 청구 불가**)
 - 2015년 1월에 서비스 제공 후 퇴사한 요양보호사도 입력!

1. 처우개선비 전산입력 기본 원칙

■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 판단 기준 : 보수의 비교 가능 여부

- 기존종사자 : '14년 12월과 '15년 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비교가 가능한 자** 예시) 2015년 1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구분	기존종사자	신규입사자	
2014년 12월 보수	○	○	X
2015년 1월 보수	○	X	○

- 신규입사자 : '14년 12월과 '15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자**

신규입사자 선택 기준
'15.1월에 입사한 신규 요양보호사
'14.12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15.1월 서비스 제공
'14.12월과 '15.1월에 방문요양은 두 달 모두 제공하였지만 방문목욕을 '15.1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방문요양:기존종사자, 방문목욕:신규입사자)
2015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예: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2015년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무종료·퇴사 처리 후 2015년 1월 1일자로 근무시작·입사 처리한 경우(예:시간제→전임 등)



1. 처우개선비 전산입력 기본 원칙

■ 기존종사자 입력 기준 월

	전년도	당년도
월급·시급	2014년 12월 지급 보수 (처우개선비 제외)	2015년 1월 지급 (예상) 보수 (처우개선비 제외)
처우개선비(월)	2014년 12월 처우개선비	2015년 1월 처우개선비
근무개월수 (월급) 연간근무시간(시급)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제 근무 개월 또는 근무시간	2015년 1월~12월까지 예상 근무 개월 또는 근무시간
연간 보수액	2014년 1월~12월까지 지급받은 보수(처우개선비 제외)	2015년 1월~12월까지 지급받은 보수(처우개선비 제외)

※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져 보수의 증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2014년 11월 25일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급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1월엔 월 중 입사로 5일만 근무하여 15만원만 지급,
이후 한 달 전체 근무하여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① 한 달 전체 근무로 연간 보수액을 계산한 경우

근무개월수:2개월, 연간보수액:300만원(150만원X2개월) ⇒ 월평균보수액 150만원 (O)

②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입력하는 경우

근무개월수:2개월, 연간보수액:165만원(15만원+150만원) ⇒ 월평균보수액825,000원(X)

1. 처우개선비 전산입력 기본 원칙

■ 신규입사자 입력 기준 월

	2015년 1월 근무자 ①	2월 1일 이후 근무자 ②
월급 · 시급	2015년 1월 지급(예상)보수 (처우개선비 제외)	근무시작 월의 지급(예상) 보수 (처우개선비 제외)
처우개선비(월)	2015년 1월 처우개선비	근무시작 월 처우개선비
근무개월수 (월급) 연간근무시간(시급)	2015년 1월~12월까지 예상 근무 개월 또는 근무시간	근무시작 월~12월까지 예상 근무 개월 또는 근무시간
연간 보수액	2015년 1월~12월까지 지급받을 예상 보수 (처우개선비 제외)	근무시작 월~12월까지 지급받을 예상 보수 (처우개선비 제외)

※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져 월평균 보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2015년 1월 25일에 입사한 신규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급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월엔 월 중 입사로 5일만 근무하여 15만원만 지급, 이후 한 달 전체 근무하여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① 한 달 전체 근무로 연간 보수액을 계산한 경우

근무개월수:12개월, 연간보수액:1,800만원(150만원X12개월) ⇒ 월평균보수액 150만원 (O)

②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입력하는 경우

근무개월수:12개월,연간보수액:1665만원(15만원+150만원X11개월)⇒월평균보수액1,387,500원(X)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작성방법 바로가기

2015년 1월 이후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은 요양보호사
※ 두 달 중 어느 한 달이라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입사자로 입력합니다.
 - 신규입사자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장기요양기관에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② 2014년 12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5년 1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③ 방문요양은 2014년 12월, 2015년 1월 두 달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방문목욕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방문요양 : 기존종사자, 방문목욕 : 신규입사자)
 ④ 2015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⑤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무종료·퇴사 처리 후 새로 근무시작·입사 처리한 경우
 (예 : 시간제 → 전임)
- ※ 2014년 12월 이전 청구를 위한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3~12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1~6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 2014년 7~12월 급여 청구 : 채용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안내(2014.7.17.)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대장조회



지급계획서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신규입사자
대장조회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채용개선비』 선택 후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지급계획서 출력을
선택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처우개선비 기존종사자

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기준

기준연월 2015년 01월

종사자 (이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제출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	4	20120822	99991231	X	X	-	상세보기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	9	201101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② 기준연월 : 2015년 1월 선택

※ 기준연월 선택 후 조회하면 인력신고한 요양보호사가 모두 조회됩니다. (이름 조회 가능)

※ 기존종사자의 경우 2014년 12월에 해당 기관에 근무중이었으면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조회됩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직처리된 경우 조회되지 않음)

※ 신규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근무 시작한 요양보호사까지 조회됩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연번	급여유형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제출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4	20120822	99991231	X	X	-	상세보기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9	999101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③ 화면 구성 안내

- 근무시작일자 : 시·군·구에 신고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자 : 시·군·구에 신고한 근무종료일
 - 근무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99991231"로 보여짐
 - 입·퇴사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근무시작일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조회됨
- 시급·월급 입력여부 : 입력하지 않았으면 X, 입력되었으면 O
 -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급이 X 면 월급이 O 입니다.
- 제출일자 :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최종 일자가 보여짐
 - 제출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 표시로 보여집니다.
- 입력내용 상세보기 : 입력을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택
 - 보수비교표 입력을 하려면 이름을 클릭!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처우개선비 기존종사자

제출 | 지급계획서 출력 | 기존종사자 기준

기준연월 2015년 01월 ▼ 종사자 (이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제출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정자	720111201	20120822	99991231	×	×	-	상세보기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정자	720111201	20120822	99991231	×	×	-	상세보기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정자	720111201	20120822	99991231	×	×	-	상세보기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정자	720111201	20120822	99991231	×	×	-	상세보기

급여유형	직종	성명	보수형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보수형태 ▼ 보수형태 1.시급 2.월급

- ④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배경색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하단의 급여유형/직종/성명/보수형태가 보여지면 시급/월급 중 해당되는 보수형태를 선택
- 보수형태를 선택하면 보수(비교)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하단에 펼쳐져서 보여집니다.
- ※ 입력내용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입력한 결과가 보여지는 것으로, 입력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월급)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검직내용		월보수			
	여부	직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검직여부 ▼	검직직종 ▼	0	0	0	0

 버튼을 선택하면
 간단한 안내메세지가 보여집니다.
 법정수당 및 기타로 세분화할 수 없는 경우 기본급에
 등록합니다.

① 해당기관 검직내용(검직은 동일 기관을 의미합니다)

- 요양보호사 외 다른 직종으로 인력신고·근무할 경우 : 1. 검직(Y), 직종 선택
- 요양보호사 인력신고만 되어있고 근무할 경우 : 2. 검직(N)

② 월보수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기본급 : 월 보수를 받는 경우 기본급여 입력
- 법정수당 : 연차,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 기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정액 (예:복리후생비, 교통비 등)

※ 월급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없이 기본급으로 등록 가능

※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져 보수의 증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월급)

근무개월수 및 연간총보수액					월평균보수액
처우개선비(월)	근무개월수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③ 처우개선비(월) : 전년도 : 2014년 12월, 당년도 : 2015년 1월 처우개선비

④ 근무개월수

- 전년도 : 2014년 1월~12월 중 실제 근무개월수
- 당년도 : 2015년 1월~12월 중 예상 근무개월수(퇴직이 예상되지 않은 경우 12개월입니다.)

⑤ 연간보수액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전년도 : 2014년도 1월~12월 실제 지급 보수
- 당년도 : 2015년 1월~12월 지급 예정 보수
- 단,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져 보수의 증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2014년 11월 25일에 입사한 신규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급 150만원을 지급받는 (11월엔 월 중 입사로 5일만 근무하여 15만원만 지급, 이후 한 달 전체 근무하여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① 한 달 전체 근무로 계산한 경우

근무개월수:2개월, 연간보수액:300만원(150만원X2개월) ⇒ 월평균보수액 150만원 (O)

②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입력하는 경우

근무개월수:2개월, 연간보수액:165만원(15만원+150만원X1개월)⇒월평균보수액825,000원 (X)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월급)

처우개선비(월) ⓘ	근무개월수 및 연간총보수액 ⓘ			계	월평균보수액
	근무개월수 ⓘ	연간보수액 ⓘ	일시적성과금 ⓘ		
0	0	0	0	0	0

⑥ 일시적 성과금 : 연1~2회 받는 금액 (예 : 명절 효도비, 인센티브 등)

⑦ 계 :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금이 자동으로 계산

⑧ 월평균 보수액 : 연간보수액/근무개월수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짐

※ 월급은 전 · 당년도 월평균보수액을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합니다.

※ 월평균보수액이 625원이나 10만원 등 처우개선비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연간보수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시급)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검직내용		시간급			
	여부	직종	시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검직여부 ▼	검직직종 ▼	0	0	0	0

 버튼을 선택하면
 간단한 안내메세지가 보여집니다.
 법정수당 및 기타로 세분화할 수 없는 경우 기본급에
 등록합니다.

① 해당기관 검직내용 (검직은 동일 기관을 의미합니다)

- 요양보호사 외 다른 직종으로 인력신고·근무할 경우 : 1. 검직(Y), 직종 선택
- 요양보호사 인력신고만 되어있고 근무할 경우 : 2. 검직(N)

② 시간급 (초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기본급 : 시급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시간당 급여여 입력
- 법정수당 : 월 법정수당(연차,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 근무시간
- 기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정액 (예:복리후생비, 교통비 등)

※ 시급을 법정수당과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구분없이 시급으로 등록 가능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시급)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보수액					시간당평균보수액
처우개선비(월)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③ 처우개선비(월) : 전년도 : 2014년 12월, 당년도 : 2015년 1월 처우개선비

④ 연간근무시간

- 전년도 : 2014년 1월~12월 중 실제 근무 시간
- 당년도 : 2015년 1월~12월 중 예상 근무시간

⑤ 연간보수액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전년도 : 2014년 1월~12월 실제 지급 보수
- 당년도 : 2015년 1월~12월 지급 예정 보수
- 시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시간과 보수를 입력합니다.

예시) 2014년 11월 25일에 입사한 신규 영양보호사가 현재까지 근무중인 경우
(시급 7,000원, 월 80시간 근무, 2014년 11월은 10시간 근무)

① 전년도 연간근무시간/연간보수액

연간근무시간 : 90시간(10시간+80시간), 연간보수액 : 630,000원(7,000원X90시간)

② 당년도 연간근무시간/연간보수액

연간근무시간 : 960시간(80시간X12개월), 연간보수액 : 6,720,000원(7,000원X960시간)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시급)

처우개선비(월)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총보수액			계	시간당평균보수액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0	0	0	0	0	0

- ⑥ 일시적 성과금 : 연1~2회 받는 금액 (예 : 명절 효도비, 인센티브 등)
- ⑦ 계 :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⑧ 시간당평균 보수액 : 연간보수액/연간근무시간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짐
 ※ **시급은 전 · 당년도 월평균보수액을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합니다.
 ※ 시간당평균보수액이 625원이나 10만원 등 처우개선비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연간보수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감소사유)

증감	감소사유	4대보험 가입			
		건강	연금	산재	고용
감소	감소사유 감소사유 1.근무시간 감소(전년대비 야간, 휴일, 휴가 등 근무시간이 줄어듦) 2.직책 변경(당년도에 직책이 변경됨) 3.수급자 변동(가족 <-> 일반, 등급변동) 4.기타사유(1~3번과 다른 정당한 사유) 5.임금삭감(급여비용 청구불가)	☐	☐	☐	☐

관련문서는 반드시 비치

※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에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 - 오른쪽 버튼 클릭 - 메뉴 모음 체크)

care.or.kr 추가

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보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저장 후 제출할 수 있으나, 보수가 감소된 경우

- ① 근무시간 감소(전년대비 야간, 휴일, 휴가 등 근무시간이 줄어듦)
- ② 직책변경(당년도에 직책이 변경됨, 예: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 ③ 수급자 변동(가족↔일반, 등급변동)의 경우엔 예외로 함.

■ 그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기타사유 선택 후 감소 기타사유에 상세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 ⑤ 임금삭감을 선택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 불가

※ 신규입사자는 보수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감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은 가입이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기존종사자만 해당)

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기준

기준연월 2015년 01월 ▼ 종사자 (이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직종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근무 시작일 자	근무 종료일 자	시급 입력여 부	월급 입력여 부	제출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 급	이		20120626	99991231	○	×		상세 보기

- ① 기존종사자 요양보호사 자료를 **모두 입력한 후** 상단의 제출버튼 선택
- 요양보호사 별 보수비교표를 모두 입력한 후 **한 번에 제출**
 - 지급계획서는 제출이 완료되면 수정할 수 없음
 - 제출 기한 내 : 제출하였어도 삭제 후 재입력·제출 반복 가능
 - 제출 기한 후 : 수정 불가, 삭제·입력·제출 할 수 없음
 - 제출 기한 내에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를 입력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내역이 없으면 제출기한 후에도 1회에 한하여 제출 가능
 - 단,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 기존종사자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버튼을 선택하면, 임금현황 화면 보여짐(뒷페이지)

※ 신규입사자 : **저장으로 완료되며,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기존종사자만 해당)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제출

전년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대상자	시급합산액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입소시설	월급합산액
41 명	212,696 원	111,348 원	101,348 원	0 원	0 원	0 원	15,980,000 원

기타(특이사항 등)

당년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대상자	시급합산액	평균인상률	월급합산액	평균인상률	지급예정일
41 명	214,254 원	0.7 %	15,980,000 원	0 %	매 월 일

제출

② 전년도,당년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확인

- 전년도 : 시급합산액 : 전년도 시급자료 조회(시급합산액, 급여유형별로 보여짐)
월급합산액 : 전년도 월급자료 조회(월급합산액만 보여짐)
- 당년도 : 시급합산액 : 당년도 시급자료(시급합산액, 평균인상률)
월급합산액 : 당년도 월급자료(월급합산액, 평균인상률)

③ 기타 (특이사항)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

④ 지급예정일 : 처우개선비 **선지급 예정일** 입력

⑤ 제출 : 제출하면 제출 완료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기존종사자만 해당)

작성방법 바로가기

2015년 1월 이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은 요양보호사
※ 두 달 중 어느 한 달이라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입사자로 입력합니다.
- 신규입사자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장기요양기관에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② 2014년 12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5년 1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③ 방문요양은 2014년 12월, 2015년 1월 두 달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방문목적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방문요양 : 기존종사자, 방문목적 : 신규입사자)
④ 2015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⑤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무종료·퇴사 처리 후 새로 근무시작·입사 처리한 경우
(예 : 시간제 → 전임)
- ※ 2014년 12월 이전 청구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3~12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 (2013.3.25.)
- 2014년 1~6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 (2014.1.16.)
- 2014년 7~12월 급여 청구 :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안내 (2014.7.17.)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대장조회



지급계획서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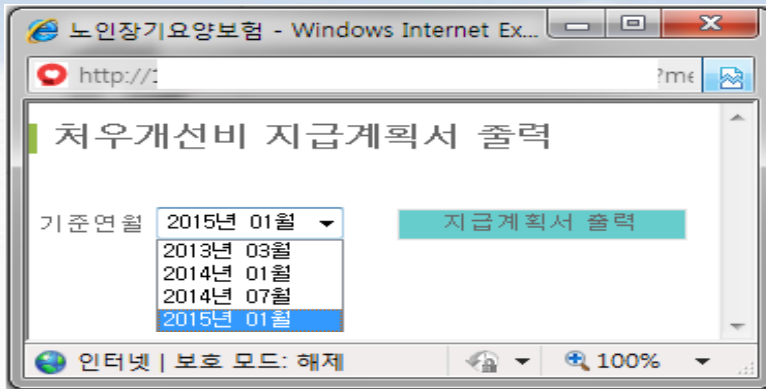


신규입사자
대장조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처우개선비』 선택 후 지급계획서를 선택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기존종사자만 해당)



- ② 기준연월 : 2015년 1월 선택
- ③ 지급계획서 출력 선택
 - 해당되는 처우개선 지급계획서가 화면에 보여짐

2015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				
장기요양 기관	명 칭	기관기호		
	전화번호	주 소		
전년도 요양보호사 보수현황	○ 요양보호사 평균 보수현황			
	- 대상자 : 요양보호사 3명			
	- 시간당 평균보수액 : 6,500 원			
	· 방문요양 : 6,500 원 · 방문목욕 : 0원 · 주 · 야간보호 : 0원			
	· 단기보호 : 0 원 · 시설급여기관 : 0원			
	- 월평균보수액 : 1,100,000 원			
당년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 요양보호사 보수 지급계획			
	- 대상자 : 요양보호사 3명			
	- 시간당 평균보수액 : 6,541 원,		평균 인상률: 0.6 %	
	- 월평균보수액 : 1,150,000 원,		평균 인상률: 4.5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			
	- 지급예정일 : 매월 20 일			

- ④ 왼쪽 상단 인쇄 버튼 선택하여 출력

※ 신규입사자 : **저장으로 완료, 제출하지 않음!!**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작성방법 바로가기

2015년 1월 이후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은 요양보호사
※ 두 달 중 어느 한 달이라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입사자로 입력합니다.
 - 신규입사자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장기요양기관에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② 2014년 12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5년 1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③ 방문요양은 2014년 12월, 2015년 1월 두 달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방문목욕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방문요양 : 기존종사자, 방문목욕 : 신규입사자)
 ④ 2015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⑤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무종료·퇴사 처리 후 새로 근무시작·입사 처리한 경우
 (예:시간제→전임)
- ※ 2014년 12월 이전 청구를 위한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3~12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1~6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 2014년 7~12월 급여 청구 : 채용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안내(2014.7.17.)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매장조회



지급계획서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신규입사자
매장조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채용개선비』 선택 후
신규입사자 대상입력을 선택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서태 시 시그인사자 기즈으

처우개선비 신규입사자

신규입사자 기준

종사자 (이름

급여제공연월

2015년 1월 이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저장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김영희	3201311132	3		×	×	-	상세보기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김영희	3201311132	3		×	×	-	상세보기
3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1급	김영희	0201108019	1		×	×	-	상세보기
4	다기보호	요양보호사 1급	김영희	0201108019	1		×	×	-	상세보기

② 기준연월 : 2015년 1월 이후 선택

- 급여제공연월 선택 후 조회하면 인력신고한 요양보호사가 모두 조회 (이름 조회 가능)
- 신규입사자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요양보호사까지 조회됩니다.

※ 기존종사자의 경우 2014년 12월에 해당 기관에 근무중이었으면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조회됩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직처리된 경우 조회되지 않음)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연번	급여유형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저장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4	20120822	99991231	X	X	-	상세보기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9	99910101	99991231	X	X		상세보기

③ 화면 구성 안내

- 근무시작일자 : 시·군·구에 입력 신고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자 : 시·군·구에 입력 신고한 근무종료일
 - 근무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99991231"로 보여짐
 - 입·퇴사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근무시작일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조회됨
- 시급·월급 입력여부 : 입력하지 않았으면 X, 입력되었으면 O
 -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급이 X 면 월급이 O
- 저장일자 : 저장을 한 마지막 일자가 보여짐
 - 입력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 표시로 보여짐
- 입력내용 상세보기 : 입력을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택
 - 보수표 입력을 하려면 이름을 클릭합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처우개선비 신규입사자

신규입사자 기준

종사자 (이름) 급여제공연월 2015년 1월 이후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시작일자	근무종료일자	시급입력여부	월급입력여부	저장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강		2013111320		×	×	-	상세보기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강		2013111320		×	×	-	상세보기
3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1급	강		2011080199		×	×	-	상세보기
4	다기보호	요양보호사 1급	강		2011080199		×	×	-	상세보기

급여유형	직종	성명	보수형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강	보수형태 보수형태 1.시급 2.월급

- ④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배경색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하단의 급여유형/직종/성명/보수형태가 보여지면 시급/월급 중 해당되는 보수형태를 선택
- 보수형태를 선택하면 보수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하단에 펼쳐져서 보여집니다.
- ※ 입력내용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입력한 결과가 보여지며, 입력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 신규입사자 입력 기준 월

	2015년 1월 근무자 ①	2월 1일 이후 근무자 ②
월급 · 시급	2015년 1월 지급(예상)보수	근무시작 월의 지급(예상) 보수
처우개선비(월)	2015년 1월 처우개선비	근무시작 월 처우개선비
근무개월수 (월급) 연간근무시간(시급)	2015년 1월~12월까지 예상 근무 개월 또는 근무시간	근무시작 월~12월까지 예상 근무 개월 또는 근무시간
연간 보수액	2015년 1월~12월까지 지급받을 예상 보수	근무시작 월~12월까지 지급받은 보수

※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져 보수의 증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2015년 1월 25일에 입사한 신규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급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월엔 월 중 입사로 5일만 근무하여 15만원만 지급, 이후 한 달 전체 근무하여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① 한 달 전체 근무로 계산한 경우

근무개월수:12개월, 연간보수액:1,800만원(150만원X12개월) ⇒ 월평균보수액 150만원(O)

②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입력하는 경우

근무개월수:12개월, 연간보수액:1665만원(15만원+150만원X11개월)⇒월평균보수액 **1,387,500원(X)**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월급)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검직내용		월보수			
	여부	직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검직여부 ▼	검직직종 ▼	0	0	0	0

① 해당기관 검직내용

- 요양보호사 외 다른 직종으로 인력신고·근무할 경우 : 1. 검직(Y), 직종 선택
- 요양보호사 인력신고만 되어있고 근무할 경우 : 2. 검직(N)

② 월보수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2015년 1월 근무자 ①	2월 1일 이후 근무자 ②
월보수	2015년 1월 지급(예상)보수	근무시작 월의 지급(예상) 보수

- 기본급 : 월 보수를 받는 경우 기본급여 입력
- 법정수당 : 연차,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 기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정액 (예:복리후생비, 교통비 등)

※ 월급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없이 기본급으로 등록 가능

※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월급)

근무개월수 및 연간총보수액					월평균보수액
처우개선비(월)	근무개월수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2015년 1월 근무자	2월 1일 이후 근무자
③ 처우개선비(월)	2015년 1월 처우개선비	근무시작 월 처우개선비
④ 근무개월수(월급)	2015년 1월~12월까지 예상 근무 개월	근무시작 월~12월까지 예상 근무 개월
⑤ 연간 보수액	2015년 1월~12월까지 지급받을 예상 보수	근무시작 월~12월까지 지급받을 예상 보수

※ 연간보수액 :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2015년 1월 25일에 입사한 신규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급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월엔 월 중 입사로 5일만 근무하여 15만원만 지급, 이후 한 달 전체 근무하여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① 한 달 전체 근무로 계산한 경우

근무개월수:12개월, 연간보수액:1,800만원(150만원X12개월) ⇒ 월평균보수액 150만원 (O)

②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입력하는 경우

근무개월수:12개월,연간보수액:1665만원(15만원+150만원X11개월)⇒월평균보수액1,387,500원(X)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월급)

처우개선비(월) ⓘ	근무개월수 및 연간총보수액 ⓘ			월평균보수액	
	근무개월수 ⓘ	연간보수액 ⓘ	일시적성과금 ⓘ		
0	0	0	0	계	0

⑥ 일시적 성과금 : 연1~2회 받는 금액 (예 : 명절 효도비, 인센티브 등)

⑦ 계 :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⑧ 월평균 보수액 : 연간보수액/근무개월수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짐

※ 월평균보수액이 625원이나 10만원 등 처우개선비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연간보수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시급)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검직내용		시간급			
	여부	직종	시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검직여부 ▼	검직직종 ▼	0	0	0	0

① 해당기관 검직내용

- 요양보호사 외 다른 직종으로 인력신고·근무할 경우 : 1. 검직(Y), 직종 선택
- 요양보호사 인력신고만 되어있고 근무할 경우 : 2. 검직(N)

② 시간급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2015년 1월 근무자 ①	2월 1일 이후 근무자 ②
시간급	2015년 1월 지급(예상)보수	근무시작 월의 지급(예상) 보수

- 기본급 : 시급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시간당 급여액 입력
- 법정수당 : 월 법정수당(연차,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 근무시간
- 기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정액 (예:복리후생비, 교통비 등)

※ 시급을 법정수당과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없이 시급으로 모두 등록 가능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시급)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총보수액					시간당평균보수액
처우개선비(월)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2015년 1월 근무자	2월 1일 이후 근무자
③ 처우개선비(월)	2015년 1월 처우개선비	근무시작 월 처우개선비
④ 연간근무시간(시급)	2015년 1월~12월까지 예상 근무시간	근무시작 월~12월까지 예상 근무시간
⑤ 연간 보수액	2015년 1월~12월까지 지급받을 예상 보수	근무시작 월~12월까지 지급받을 예상 보수

※ 연간보수액 :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시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시간과 보수를 입력합니다.

- 예시2) 2015년 3월 20일부터 급여제공을 시작한 경우(시급 7,000원, 월 80시간 근무)
- 연간근무시간 : 740시간(3월 20시간 + (9개월X80시간)) : (3월 20시간, 4~12월 80시간)
 - 연간보수액 : 5,180,000원(7,000원x740시간)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시급)

처우개선비(월)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총보수액			계	시간당평균보수액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0	0	0	0	0	0

- ⑥ 일시적 성과금 : 연1~2회 받는 금액 (예 : 명절 효도비, 인센티브 등)
- ⑦ 계 :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⑧ 시간당평균 보수액 : 연간보수액/연간근무시간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짐
※ 시간당평균보수액이 625원이나 10만원 등 처우개선비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연간보수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수(비교)표 입력내용 조회 :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대장조회

작성방법 바로가기

2015년 1월 이후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은 요양보호사
※ 두 달 중 어느 한 달이라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입사자로 입력합니다.
- 신규입사자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장기요양기관에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② 2014년 12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5년 1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③ 방문요양은 2014년 12월, 2015년 1월 두 달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방문목적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방문요양 : 기존종사자, 방문목적 : 신규입사자)
④ 2015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⑤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무종료·퇴사 처리 후 새로 근무시작·입사 처리한 경우
(예 : 시간제 → 전임)
- ※ 2014년 12월 이전 청구를 위한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3~12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1~6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 2014년 7~12월 급여 청구 : 채용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안내(2014.7.17.)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대장조회



지급계획서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신규입사자
대장조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채용개선비』 선택 후
기존종사자 대장조회를 선택

5. 보수(비교)표 입력내용 조회 :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대장조회

기준연월 2015년 01월

(월급) 기존 종사자 보수비교표

기준연월	대상연월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시작일	해당기간 검칙내용		보수형태	서비스종류	월보수				처우개선비	근무개월수	연간총보수액			월평균보수액	증감	감소사유	4대보험가입			
						여부	직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201407201312	11.요양보호사 1급				20110923	N		월급	방문요양	1,100,000	0	0	1,100,000	100,000	1	1,100,000	0	1,100,000	1,100,000	-	-	-	-	-	-
201407201407	11.요양보호사 1급				20110923	N		월급	방문요양	1,150,000	0	0	1,150,000	100,000	6	6,900,000	0	6,900,000	1,150,000	증가		×	×	×	×

(시급) 기존 종사자 보수비교표

기준연월	대상연월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시작일	해당기간 검칙내용		보수형태	서비스종류	시간급				처우개선비	연간근무시간	연간총보수액			시간당평균액	증감	감소사유	4대보험가입			
						여부	직종			시급	법정수당	기타	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201407201312	11.요양보호사 1급				20121101	Y	3.사회복지사	시급	방문요양	5,000	1,000	20,000	26,000	62,500	100	600,000	0	600,000	6,000	-	-	-	-	-	-
201407201407	11.요양보호사 1급				20121101	N		시급	방문요양	6,000	0	0	6,000	62,500	1,000	6,000,000	0	6,000,000	6,000	증가	×	×	×	×	×

②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조회

- 기준연월 : 2015년 1월
- 보수비교표는 월급과 시급이 같이 보여집니다.



5. 보수(비교)표 입력내용 조회 : 신규입사자 보수표 대장조회

작성방법 바로가기

2015년 1월 이후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은 요양보호사
※ 두 달 중 어느 한 달이라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입사자로 입력합니다.
 - 신규입사자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장기요양기관에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② 2014년 12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5년 1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③ 방문요양은 2014년 12월, 2015년 1월 두 달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방문목욕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방문요양 : 기존종사자, 방문목욕 : 신규입사자)
 ④ 2015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⑤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무종료·퇴사 처리 후 새로 근무시작·입사 처리한 경우
 (예 : 시간제 → 전임)
- ※ 2014년 12월 이전 청구를 위한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3~12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1~6월 급여 청구 : 요양보호사 채용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 2014년 7~12월 급여 청구 : 채용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안내(2014.7.17.)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대장조회



지급계획서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신규입사자
대장조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채용개선비』 선택 후
신규입사자 대장조회를 선택

5. 보수(비교)표 입력내용 조회 : 신규입사자 보수표 대장조회

급여제공연월 2015년 1월 이후 > 조회

(월급) 신규입사자 보수비교표

기준연월	대상연월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시작일	해당기관직내용 여부	직종	보수형태	서비스종류	월급여				처우개선비	연간근무개월	연간총지급액			월평균지급액	4대보험가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연간지급액	일시적성과급등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201401	201401	11.요양보호사 1급			20140303	N		2	단기보호	1,030,000	0	0	1,030,000	100,000	10	11,300,000	0	11,300,000	1,130,000	1	1	1	1
201401	201401	11.요양보호사 1급			20140303	N		2	주야간보호	1,030,000	0	0	1,030,000	100,000	10	11,300,000	0	11,300,000	1,130,000	1	1	1	1

(시급) 신규입사자 보수비교표

기준연월	대상연월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시작일	해당기관직내용 여부	직종	보수형태	서비스종류	시간급				처우개선비	연간근무시간	연간총지급액			시간당평균급여액	4대보험가입			
										시급	법정수당	기타	계			연간지급액	일시적성과급등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201401	201401	11.요양보호사 1급			20140401	N		1	방문요양	7,000	0	0	7,000	100,000	1,440	10,080,000	0	10,080,000	7,000	1	1	1	1

인터넷 | 보호 모드: 해제

100%

② 신규입사자 보수표 조회

- 급여제공연월 : 2015년 1월
- 보수표는 월급과 시급이 같이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